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8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이해민 · 김기표
홍기원 · 김태년 · 송옥주
박희승 · 조인철 · 최기상
신영대 · 박수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,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,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

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).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중 “무자력(無資力)”을 “무자력[제1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확인한 자산총액(「민사집행법」 제195조제3호에 따른 생계비 액수를 제외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]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외국민
2.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비의 대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	제19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사건·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<u>무자력(無資力)</u>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	1. ----- ----- <u>무자력</u> [제1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확인한 자산총액(「민사집행법」 제195조제3호에 따른 생계비 액수를 제외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]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외교부장관은 <u>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</u>	③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</u>

<u>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④ · ⑤ (생략)	<u>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</u> <u>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외국민</u> <u>2.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받은 재외국민</u>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